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1.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에 관한 시·도지사 권한의 시·군·구
이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591호,
2007. 8. 3 공포, 2008. 8. 4 시행)됨에 도 업무 이관에 따른
수수료 요율표를 정비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 이관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항목 신설

- 비료생산업 등록(신설) : 1건 20,000원
- 비료수입업 신고(신설) : 1건 20,000원

3. 개정조례안: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

5.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비료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율	비 고
<증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	
(2)	의료기관, 약국(휴, 폐업)사실증명	1통	500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등초본 교부			지적관계제외
	· 대장문서	1통	300	
	· 토지도면	1통	300	
	· 건물도면	1통	300	
(2)	공부열람			지적관계제외
	· 기본료	시간당	100	
	· 초과료	10분당	100	
(3)	인·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	1건	100	
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건	400	
(2)	환지예정지 분할	1건	300	
(3)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1건	300	
(4)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건	300	
(5)	체비지 분할신청	1건	300	
(6)	토지대금완납증명	1통	300	
(7)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증명	1건	300	
(8)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 칼라발급 1,500	

구	분	기준	요율	비 고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1건	800		
5. 회계에 관한 증명				
(1) 원천징수공제증명	1건	300		
6. 주택에 관한 증명				
(1)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건	300		
(2)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1주택	800		
7. 지가관련 확인원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1필지	800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5,000 갱신 또는 기간연장 3,000		
(2) 전기요금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50		
(3) 주택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		
(4)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		
(5)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증명				
(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1건	법인30,000 개인20,000		
(나)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800		
(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20,000		
2. 농수산 관계				
(1) 내수면 어업 관계				
(가) 어업면허 신청	1건	1,600		
(나) 어업허가 신청	1건	1,000		
(다) 어업면허 연장 허가신청	1건	1,000		
(라)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	1건	1,000		
(마) 어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1건	800		
(바)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	1,000		
(사)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 재발급	1건	1,000		

구	분	기준	요율	비 고
(2)	수산물 가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	
(3)	어선관계			
	(가)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1건	800	
(4)	농정 관계			
	(가) 비료생산업 등록	1건	20,000	신 설
	(나)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신 설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 신청	1건	30,000	
(2)	주유소 등록 신청	1건	20,000	
(3)	용제 판매소 등록	1건	10,000	
4.	건설 관계			
(1)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2)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신청	1건	500	
(3)	공작물등 설치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4)	토석, 사력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5)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허가(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1건	점용료의 1/1000	
(6)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7)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	
(8)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 점용 허가	1건	1,000	
(9)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900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척당	1,300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	
(10)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	1건	500	
(11)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	

구 분	기준	요율	비 고
(12)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500	
(13)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	
(14)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500	
5. 문화.공보 관계			
(1) 종합.일반유원시설업 신규허가신고	1건	50,000	
(2) 종합.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1건	50,000	
(3)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1건	30,000	
(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1건	20,000	
(5) <삭제>			
(6)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1건	5,000	
(7)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	
(8)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	
(9) 영화업 신고	1건	20,000	
(10)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	
(11)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	
6. 보건소 관계			
(1)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2) 의료기관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	
(3)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4) 부속의료기관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	
(5) 안경업소 개설등록신고	1건	20,000	

구 분	기준	요율	비 고
(6) 안경업소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7) 치과기공소인정신청	1건	20,000	
(8) 치과기공소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7. 체육시설 관계			
(1)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	
(2)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	
9.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으로 타법령으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정하 는 것(법령상 의무 사항제외)	1건	500	

관 계 법 령

□ 비료관리법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충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9, 2007.8.3>

② 삭제 <1999.3.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타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부산물비료의 생산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3.31>

④ 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충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② 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